

비윤리행위신고자 보호·보상 처리요령

▶ 연혁 목록 펼치기(5건)

- 개정 2014-01-13 **개정문**
- 타사규개정 2013-10-31 **개정문**
- 개정 2012-03-07 **개정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윤리경영 규정 제25조제4항](#) 윤리헌장·강령 위반행위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고(이하 "비윤리행위신고")의 의무·방법·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신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0.5.2, 2013.10.31>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한국석유공사 소속 임직원(별정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외부 신고자가 공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시에는 이 지침에 준하여 보호·보상한다. <개정 2010.5.2>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이라 함은 현금, 상품권 등을 말한다.
2.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내·외부 신고”라 함은 공사 업무와 관련된 사내외 비윤리 행위를 인지한 공사 임직원 및 외부인이 윤리경영 핫라인 등을 통해 공사 임직원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2>
5. “클린 신고”라 함은 외부 이해관계자 및 공사 임직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2>
6. “윤리경영 핫라인”이라 함은 공사 홈페이지 및 사내게시판에 임직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사이트를 말한다.

제4조(전담 책임자 운영)

- ① 공사 홈페이지, 사내게시판 및 윤리경영 Hot-Line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비윤리행위신고 사항을 처리하는 전담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5.2, 2013.10.31>
 1. 내·외부 신고사항 처리 : 감사실
 2. 클린신고사항 처리 : 윤리경영담당부서
- ② 전담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5.2>
 1. 윤리경영 핫라인,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비윤리행위신고 사항 처리<개정 2013.10.31>
 2. 비윤리행위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사무처리<개정 2013.10.31>

제5조(신고의무)

- ①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외부 이해관계자 및 공사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즉시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

제6조(신고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비윤리행위신고하는 자는 내부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클린신고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작성하여 윤리경영 핫라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전화, 방문 등 기타 가능한 수단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0.5.2, 2013.10.31>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 ① 전담부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5.2>
- ② 비실명이나 타인의 ID도용 등 신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기타 신고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감사업무처리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0.5.2>

제8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①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클린신고 사항 및 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5.2>
 - 1. 신고자, 혐의대상자 및 조사 협조자 등의 신분
 - 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관련 수집한 정보
 - 3. 신고자, 혐의대상자 및 조사 협조자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감사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0.5.2>

제9조(신고자 보호)

- ① 직원은 이 요령에 의한 비윤리행위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회사로부터 인사·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3.10.31>
- ② 직원이 비윤리행위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 담당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인사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 담당부서는 경위를 파악 하여야 하고, 불이익 처분이 인정되면 해당 부서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신고자 보호조치와는 별도로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 ⑥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01.13>

제9조의2(보복행위 고발조치 등)

<신설 2014.01.13>

-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 및 형사고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3(협조자 보호)

<신설 2014.01.13>

이 요령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의 보호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9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책임의 감면)

임직원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으나 별표2의 요건에 부합되는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한다. <개정 2010.5.2>

제11조(보상금의 지급)

- ① 이 요령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물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 2014.01.13>
- ③ 클린신고 보상금은 공사 임직원이 현금, 상품권 등 실체가 있는 금품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인 및 공사 임직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되거나 인지된 후 24시간 이내에 자율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12조(지급 대상)

비윤리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 한다.<개정 2013.10.31>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선물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단,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경조금, 선물, 음식물 및 편의 등 제외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 경조금은 5만원 한도, 선물, 음식물 및 편의 등은 3만원 한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회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4. 기타 위 1호 내지 3호를 제외한 공사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제13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윤리행위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31>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 부서 또는 감사원·사법기관 등 외부기관이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실 직원이 신고한 경우
7. 비윤리행위에 가담한 자 <개정 2010.5.2>
8. 기타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

제15조(보상 심의)

- ① 내·외부신고 전담부서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심의를 청렴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2>
 1. 내·외부신고 건에 대한 보상 여부 및 보상 수준
 2. 신고된 금품, 향응 등의 규모나 성격이 애매한 경우나 신고자에 대한 보상대상 해당 여부
 3. 기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사항
- ② 클린신고 전담부서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심의를 윤리경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5.2>
 1. 클린신고 건에 대한 보상금 추가 지급 여부
 2. 신고된 금품·향응 등의 규모나 성격이 애매한 경우나 신고자에 대한 보상대상 해당 여부
 3. 기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사항

제16조<삭제 2010.5.2>

제17조(기타 세부사항)

이 요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청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